「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개정(안) 신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개 정 사 유
[별지 제3호]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내역	[별지 제3호] 담보제공 생략자 확인내역	ㅇ 업체 기본정보 추가로 신
변경신고서	변경신고서	속한 민원 처리를 통한
를 당해 등에 대한 당보제도 충혈에 당한 교시[설치 제3호석석] 처리기간 : 즉시 후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(표를 합니다.	를 당해 등에 되면 및보게도 충성이 당한 고시[열기 제3포석식] 처리기간 : 즉시] 용 []에는 하당되는 곳에 식표를 합니다.	업무 효율성 향상
담보제공 생략자 확인내역 변경신고서	남보제공 생략자 확인내역 변경신고서 살 호 대표자 실수수 검험법호 사업자등록보호 등의규칙호	
요건 범보제공 [] 유 라스 등 조세[] 파티로 ·파징급[] 처 발 참산 ·파산 ·회설절차 '자시[] 부모발생 신용평가등급 기준미달[] 일선실신고인 지정[] 관세재원확보 곤란[]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[] 최근2년 연6억원 이상 수월[] 보근2년 연6억원 이상 수입[] 보고 설 연6억원 이상 수입[]	범인용독변호 사업자용독수 단체법	
# 보검사항 사업자등록수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다 다 다 하는 공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, 계원조제 1항에 따라 위착 같이 함보제공 설약자 확인내면 법검내용을 신고합니다. 20 년 월 일 전 고 인 (서명 또는 인) 세 관 장 귀 하 귀 하	변경사항 사업자등록수 기 타 기 타 기 하 귀 하	
합 1. 위입쟁(위입의 경우에 한함) 부 2. 사업자등록을 쓰는 법인증기부등본(필요한 경우에 한하며,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서 한 세관쟁의 확인에 등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로 제출) 3. 그 밖에 세관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저리와 관련하여 '전자정우법」 제38조 및 제38조,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관쟁이 사업자등록중, 법인증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선정인 (서명 또는 인)	철 1. 위입합(위입의 경우에 한함) 부 2 사업자동료를 또는 법인동기부동보(필요한 경우에 한하며,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 서 한 세관당의 확인에 돌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서류로 제출) 휴 3. 그 밖에 세관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본민준 이 건 업무자리와 관련하여 "전자정부법」 제38조 및 제38조,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세관당이 사업자동료공 법인동기부동보을 확인하는 것이 동의합니다.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